
「코로나19(COVID-19)」 관련

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(5편)

2021. 9. 1.



산업안전보건본부
산재 예방 지원과

□ 직무교육

- (이수기간 유예)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*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'22.6.30.까지 유예(과태료 면제)

* '21.6.10. 이후 ①안전·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(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)

- 다만,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,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*이 '22.6.30.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

* 안전·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(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)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
↳ 예시) '22.6.1.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'22.9.1.

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

- (근로자)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·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

- (관리감독자) 사업주가 관리감독자*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

* '21.6.10.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

-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,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'22.6.30.까지 유예(과태료 면제)

□ 기타 사항

- (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) 고용노동(지)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'22.6.30.까지 유예

- (교육일정 조정)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,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
- (평가시 불이익 금지)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

[참고] 교육대상별·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최저 시간

구분		신규교육	정기교육 / 보수교육	작업내용 변경 시 (1회)	특별교육 (1회)
근로자	일반	▶ 8시간	▶ (일반) 분기별 6시간 ▶ (사무직) 분기별 3시간	▶ 2시간	▶ (일반)16시간 ▶ (단기간·간헐적 작업) 2시간
	일용	▶(일반) 1시간 ▶(건설업) 4시간	-	▶ 1시간	▶ (일반) 2시간 ▶ (타워크레인 신호 업무) 8시간
	관리감독자	-	▶ 연 16시간	-	-
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	안전보건관리 책임자	▶ 6시간 이상	▶ 6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관리자/ 보건관리자	▶ 34시간 이상	▶ 24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보건 관리담당자	-	▶ 8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	일반	▶ 2시간	-	-	▶ 16시간
	단기·간헐	▶ 1시간	-	-	▶ 2시간

※ 출처: '21.7.19., 「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(사업장용)」에서 교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발췌하여 정리

□ 공통사항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■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대면 실시가 불가 피한 경우 소규모 (100인 미만)로 실시	■ 대면 실시가 불가 피한 경우 소규모 (50인 미만)로 실시	■ 워크숍,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

* 다만,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㎡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

- 사업주는 근로자·관리감독자 교육을 **집체교육**으로 하려는 경우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**사업장 자체 실시**
-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**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문**을 부착하고 **손 세정제 및 마스크**를 비치
 - 교육장을 주기적으로 소독(일 1회이상) 및 환기(일 2회 이상)
 - 교육 참석자에게 **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**(손 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예절 등)을 안내한 후 **준수 여부**를 시간대별 확인
-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**자율점검표**(붙임1)를 활용하여 매일 **방역 관련 점검**을 자체적으로 실시
- **집체교육 및 현장교육** 시 「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(사업장용)」 등에서 규정하는 **방역수칙***을 준수
 - * 발열(37.5°C이상) 확인, 출입자명부 작성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,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,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, 음식섭취 자제(물, 무알콜 음료 제외)
 - 교육 참석자가 **방역수칙**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, 위반 시 **처벌 및 불이익 발생**(붙임2)* 안내
 - *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부과 가능
 - ② 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
 -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(오전·오후 등)에 **교육과정**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**교육장소**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
 -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**행동 요령**(붙임3)에 따라 신속히 조치

□ 안전보건교육기관

- (사전안내)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(붙임4)
- (유증상자)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내 **코로나19 의심환자***(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, 방문자 등 포함)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의심환자에게 **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**(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)
 - *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
- 교육기관에 있는 **모든 사람**(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, 방문자 등)을 대상으로 **개인위생 관리**(마스크 착용 등) 조치 및 **상호접촉 자제** 안내
- 이후, **방역당국에 연락***하여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**사업장 소독, 코로나19 검사** 등 조치를 적극 이행
 - *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), 지역번호 + 120 및 관할 보건소로 연락
- (**확진환자**) 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**확진환자** 발생 시 교육기관은 방역당국의 **역학조사, 사업장 소독, 코로나19 검사** 등 조치에 적극 협조·이행
- 교육기관은 **확진환자와 동선이 겹치는** 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, 방문자 등에게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**상황 전파, 코로나19 검사** 등 조치를 적극 이행
- (**교육생 출결 관리**) 교육기관은 **확진환자** 또는 **확진환자와 접촉한** 교육생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**격리기간** 등에 대해서는 **출석(교육 수강)으로 인정**

3

감독·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

- (원칙)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
- (심층 인터뷰 등)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(안전·보건조치 등)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(대피요령 등)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*
 - *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
- 심층 인터뷰*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,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** → 과태료 부과
 - *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,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
 - **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,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

4

시행시기

- (시행시기) '21.9.1.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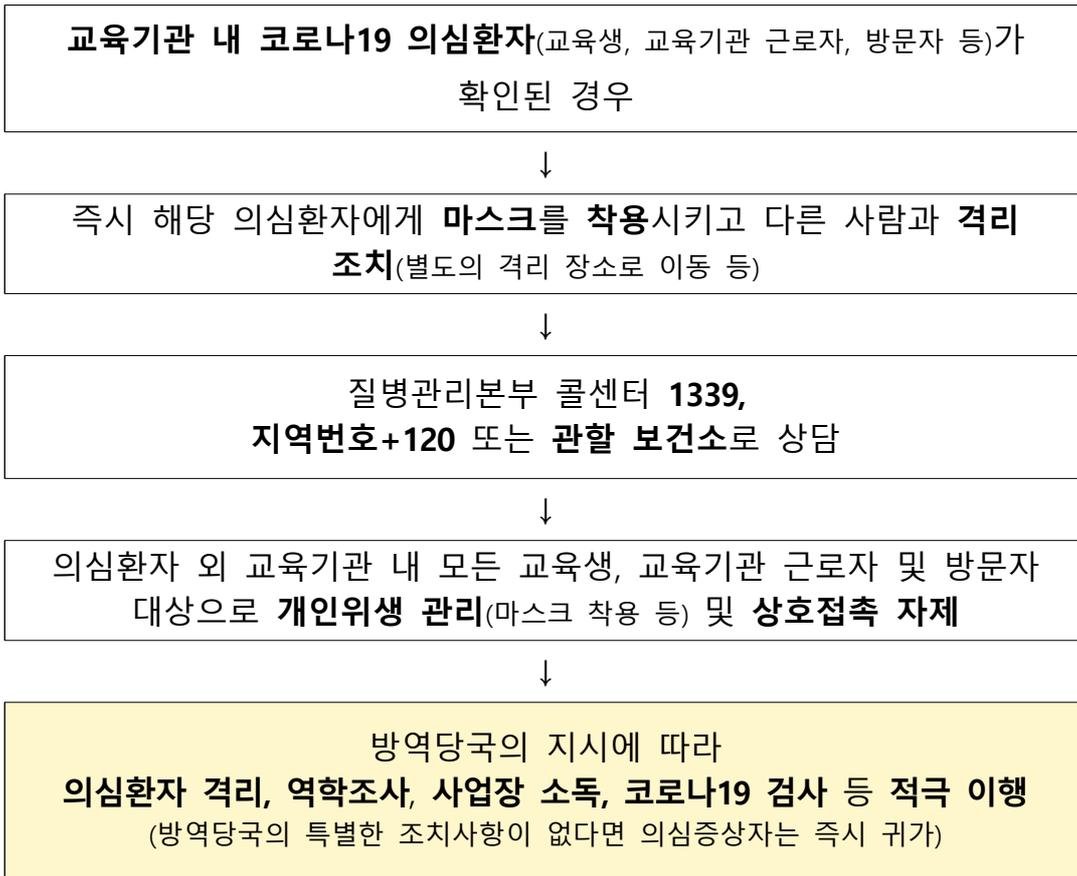
<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>

- **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**
 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 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**경계·심각**” 단계에서 **행정명령권자**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**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**
 - (과태료 부과) **계도기간 1개월('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**
 - 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**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**
 - (과태료 금액) **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**
- **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**
 - (착용 의무) **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**
 - 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 - (관리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**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** (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)
- **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**
 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‘**의약외품**’ 으로 허가 받은 **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**, 그 외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가능
 - *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 - (착용법) 마스크는 **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**
 - 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- **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**

예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·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·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예외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※ 단,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·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·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·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·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·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·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 ·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·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·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 ·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·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·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 ·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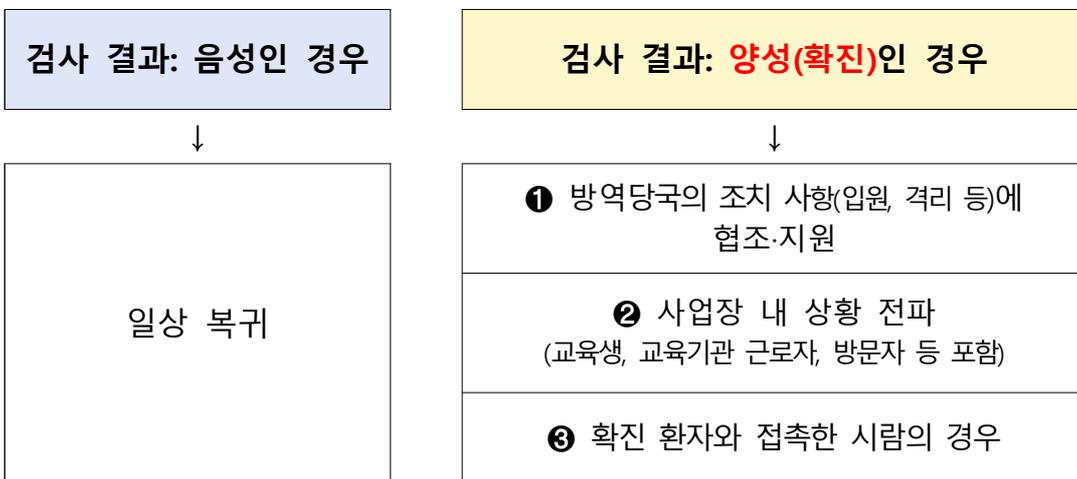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 의심환자* 발생 시 행동 요령(예시)

* 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



[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]

*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(격리 등)에 따름



※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□ 일반국민 행동수칙

질병관리청 2020.11.19

코로나19 일반국민 행동수칙 10

인플루엔자 예방

- ①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**반드시 마스크 착용**하기
*일반관리 시설, 대중교통, 집회, 시위장, 의료기관약국,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**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**
- ② 흐르는 물에 **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**
- ③ 환기가 안되고 **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**하기
- ④ 사람과 사람 사이, **두 팔 간격 2m(최소 1m) 거리두기**
- ⑤ 씻지 않은 손으로 **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**
- ⑥ **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**
- ⑦ 매일 주기적으로 **환기**하고 자주 만지는 **표면은 청소·소독**하기
- ⑧ **발열, 호흡기 증상**(기침이나 호흡곤란 등)이 있는 사람과 **접촉 피하기**
- ⑨ 매일 본인의 **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**하기
*다양한 주요 증상 : 발열(37.5°C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 그 외에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소화기 증상(오심·구토·설사 등)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막힘 등
- ⑩ **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**하기

□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

코로나19·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

일반수칙

-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
- 꼭 필요한 경우(병원방문 등)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

가정 내 주의사항

-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(2m)를 지키기
* 특히 고위험군(영유아·고령자·만성질환자 등)과 접촉 피하기
-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·식기류·휴대전화 등)은 따로 사용하기
-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·소독하기

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,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
-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
-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,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
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

-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
-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,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, 등교, 출근하기
-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

마스크 착용!



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



★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
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.

“ 마스크, 반드시 착용하세요! ”

실내

▪ 상시 마스크 착용

실외

▪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
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
▪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



마스크,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!

올바른
마스크 착용법

✓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
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
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
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착용 가능한
마스크의 종류

✓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
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 및 수술용 마스크

✓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
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